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1000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린◆이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린◆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8. 선고 99나1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의 행사로써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그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상호의 사용금지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그 상호등기의 말고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이”, “R▽▽▽AI” 등은 피고회사의 현재 상호가 등기된 시점에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주지·저명의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 할 것이고,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 및 광고에 부가하여 표시되어 있는 “한국린◆이”는 일반수요자들에게 피고 및 피고의 제품이 원고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상호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9.22.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